

2021년도 제9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4. 29.(목),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87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947건(안건번호 제2021-44040호~44654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44040호~44041호(순번 1번~2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최신 만화를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만화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44042호(순번 3번)는 SNS에서 최신 영화 등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44043호~44642호(순번 4번~603번)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1,004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안건번호 44643호~44654호(순번 604번~615번)는 웹하드 사이트와 SNS에서 최신 영화를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영화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95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87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 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B 위원: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A, B,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A 위원: 제언으로, 회의록 작성 시에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 및 방향성에 대한 논의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

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심의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람.
- A, B, C, D 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5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021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순번은 1번~615번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번~2번은 실명(1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불법 복제한 만화를 유료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

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 2건을 각각 50포인트에서 100
포인트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총 2개 게시물임.

(순번 1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50포인트에 판
매 중이며, 11권과 12권을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
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
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번~2번에 대해 의
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해당 저작물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만화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
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D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
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물로 확인됨. 심의대상 게시물이 게재된 각 영화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명확하므로 기타 쟁점에 대하여 검토함.

먼저 '밴드' 내 게시물의 시정권고 대상성에 대하여, 네이버 '밴드'와 같이 주로 공통의 관심사나 친목 도모를 위하여 개설되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회원 가입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회원 사이에 특별한 친목관계가 없는 공개적 또는 개방적 성격의 일반적인 온라인 서비스와 달리 회원들의 친목 도모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폐쇄적 성격이 강하므로 프라이버시나 사적인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

전체심의위원회(2019. 4. 26. 개최, 제2019-50회)에서 '밴드'를 통한 불법복제물 확산이 심화되고 있고, '밴드'가 저작권을 존중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이에 심의위원회는 '밴드'에서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경우라면 해당 '밴드'의 가입 용이성이나 폐쇄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심의시점에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더라도 경고의 시정권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한 바 있음.

다음으로 '밴드' 내 카테고리 전체에 대한 시정권고 적합성에 대하여 검토함. 심의위원회는 2020. 10. 19. 개최된 제2020-253회 전체위원회에서, '밴드' 내 사진첩에 게시된 총 13,556건의 그림파일 중 24건이 권리자에 의하여 불법복제물로 신고되어 해당 사진첩 전체가 심의 요청된 사안에 대하여, 24개 그림파일이 불법복제물임은 인정되나 해당 URL에 대하여 시정권고할 경우 그 내용 및 불법복제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13,556건의 사진 전체에 대하여 시정권고가 이루어져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과도하게 위

축될 수 있으므로, 24개 불법복제물의 개별 URL을 분리하여 특정 가능하다면 개별 URL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특정이 불가능하다면 사진첩 전체 URL에 대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하도록 결정한 바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①게시된 '밴드'가 대규모의 공개형 '밴드'로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며, '밴드' 개설의 목적이 불법복제물의 공유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심의대상 게시물은 160건 상당의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고 불법복제물 외의 다른 게시물은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종전의 제2020-253회 심의 안건과 달리 전체 URL에 대하여 시정권고한다 하여도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그 반면 시정권고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3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이 밴드에 게시된 영화들은 극장에서 촬영된 것인지?

- 강나래 전문위원: 직접 촬영한 동영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게시자가 극장 또는 VOD 제공용 영화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일례로 영화 '●●●●●'를 다운로드 받아보면, 첫 화면에 영상물 등급분류에 따른 시청가능연령, 등급분류번호, 제작년도 등의 정보가 표기되어 있음. 이에 비춰볼 때 합법적 경로로 유통되는 영상물을 구하여 게시한 것으로 추측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A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C, D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번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순번 4번~603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방송 '워킹데드'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9번은 웹하드

에서 방송 '워킹데드'를 230포인트에 제공 중임. 시즌1 6부작 전편을 제공하고 있음. 미국 AMC에서 2010. 10. 31. ~ 12. 5. 방송한 미국 드라마임. 좀비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사투를 그린 드라마임.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영화 '더블패티'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76번은 모바일웹하드에서 영화 '더블패티'를 315포인트에 제공 중임. 전체분량인 1시간 47분 7초를 제공하고 있음. (주)백그림에서 2021. 2. 17. 개봉한 한국 영화임.

(영화 '노매드랜드'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466번은 모바일웹하드에서 영화 '노매드랜드'를 85포인트에 제공 중임. 전체분량인 1시간 47분 36초를 제공하고 있음.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에서 2021. 4. 15. 공개한 미국 영화임. 한 기업 도시가 경제적으로 붕괴한 후 그 곳에 살던 여성 '편'이 평범한 보통의 삶을 뒤로 하고 홀로 밴을 타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순번 4번~603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순번 4번~603번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번~603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604번~615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긴급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 공개한 영화 '♠♠♠♠♠'와 ◇◇◇◇◇◇ 공개한 영화 '◁◁◁◁'이 공개와 동시에 불법복제물이 유통됨에 따라 보호원은 해당 저작물의 불법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심의를 요청함. 심의일 기준 오전 9시까지 심의 요청된 총 14개 게시물을 추가하여 보고 드리겠음.

(순번 604번 채증자료를 제시하면서) 모바일웹하드에서 영화 '♠♠♠♠♠'를 180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영화 전체분량을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순번 608번 채증자료를 제시하면서) 모바일웹하드에서 영화 '◁◁◁◁'을 170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영화 전체분량을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최신 영화를 복제·전송함으로써 해당 영화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순번 604번~615번은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순

번 604번~615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순번 604번~615번은 최신 영화 저작물로서,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604번~615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44040호~44654호(순번 1번~615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o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9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9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5. 6.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